

의 안 포 여	제2305호~제2308호
------------------	---------------

2022.11.02.(수) 11:00
제3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심 사 보 고 서

안 건
총 4건(개정안 3, 관리계획안 1) : 붙임 참조



행정자치위원회

심 사 보 고 총 괄

I 심사대상 안건

- 의안번호 제2305호 : 장성군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안번호 제2306호 : 장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안번호 제2307호 : 장성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안번호 제2308호 :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II 심 사 경 과

의안번호	제 출 일	제 출 자 (발 의 자)	회 부 일	상 정 일 (제1차 행자위)
제2305호	2022. 10. 17.	장성군수	2022. 10. 18.	2022. 10. 26.
제2306호	2022. 10. 17.	장성군수	2022. 10. 18.	2022. 10. 26.
제2307호	2022. 10. 17.	장성군수	2022. 10. 18.	2022. 10. 26.
제2308호	2022. 10. 17.	장성군수	2022. 10. 18.	2022. 10. 26.

III 심 사 결 과

안 건	심사결과
장성군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장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장성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원안가결

1 장성군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 제출일자 : 2022. 10. 17.
- 제출자 : 장성군수(가족행복과장)
- 회부일자 : 2022. 10. 18.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2. 10. 26.(제345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이유

입주 자격 중 장성군 거주기간 제한을 완화하여 관내 무주택 독거노인 입소를 장려하고 공실률을 줄이고자 함.

○ 주요내용

- 입주 신청 자격 완화 (안 제7조 제2항)
 - (현행) 3년 이상 장성군에 계속 거주
 - (개정) 1년 이상 장성군에 계속 거주
- 성별을 고려한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안 제11조 제2항)
 - (현행)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개정)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조례 개정안은 장성군 사랑의 집 입주 자격 중 장성군 거주기간 제한을 완화하여 관내 무주택 독거노인 입소를 장려하고 공실률을 줄이고자 하는 것으로써
-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으나

-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으로 안 제11조와 관련하여 양성평등 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들을 구성할 수 있도록 개선 요청한 것을 반영하여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조치 내용을 반영하였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회의록 비치)

5. 토론요지 :

- 제7조제2항의 입주신청 자격에서 장성군 계속 거주 기간을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개정하는 것이 공실률 감소와 입소를 장려하는 내용으로 개정내용이 크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기에는 미흡하다고 생각되어 제7조제2항은 현행 3년으로 유지하자는 의견제출

6. 수정안의 요지 :

- 제7조제2항 입주자격 신청요건을 현행 3년으로 유지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장성군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성군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7조(입주신청 및 자격) ② 입주를 신청 할 수 있는 자격은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3년 이상 군에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독거노인으로 혼자 생활이 가능한 자여야 한다.	제7조(입주신청 및 자격) ② (현행과 같음)

1. 심사경위

- 제출일자 : 2022. 10. 17.
- 제출자 : 장성군수(가족행복과장)
- 회부일자 : 2022. 10. 18.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2. 10. 26.(제345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이유

장기기증 제도 운영에 대한 활성화 및 유가족 지원강화에 따른 공설 장사시설의 사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여 지원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무연고자 유골 관련 단서 삭제 (안 제12조제1항)
- 사용료 등의 감면 대상자 규정 추가 (안 제13조제1항)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기증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조례 개정안은 장기기증 제도 운영을 활성화하고 유가족 지원 강화에 따른 공설 장사시설의 사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회의록 비치)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1. 심사경위

- 제출일자 : 2022. 10. 17.
- 제출자 : 장성군수(가족행복과장)
- 회부일자 : 2022. 10. 18.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2. 10. 26.(제345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이유

화장 장려금 지급제도 개선을 통해 유족 부담을 경감하고 화장문화를 장려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화장 장려금 지급 대상 추가 (안 제3조제3항)
 - 영아 등의 경우에도 화장장려금 지급대상에 포함
- 장려금 신청기한에 대한 예외 사유 규정 추가 (안 제5조제4항)
 - 장기기증 등의 절차 이행 등으로 인한 지연, 천재지변· 질병·상해 등으로 인해 지급 신청이 어려운 경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조례 개정안은 영아 등의 경우에도 화장장려금 지급대상에 포함하여 지급 대상을 확대하며 장려금 신청기한에 대한 예외 사유 규정을 추가하여 유족 부담을 경감하고 화장문화를 장려하여 화장 장려금 지급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회의록 비치)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1. 심사경위

- 제출일자 : 2022. 10. 17.
- 제출자 : 장성군수(세무회계과장)
- 회부일자 : 2022. 10. 18.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2. 10. 26.(제345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가. 「전라남도 청년문화센터 건립 토지 매입」

○ 제안이유

청년지원 종합공간 구축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토지를 매입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사업명: 전라남도 청년문화센터 건립 토지 매입
- 위치: 장성읍 영천리 1486-4 등 2필지
- 매입규모: 3,365.56㎡(군유지 : 1675.56㎡ , 매입토지 : 1,690㎡)
- 소요예산: 1,950백만원
- 공유재산관리계획

구분	재산의표시	면적(㎡)	예정가액(백만원)	취득사유
계	2필지	1,690	1,950	
토지	영천리 1486-4	1,316	1,500	청년문화센터 건립
	영천리 787-9	374	450	

○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관리계획안은 청년지원 종합공간 구축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토지를 매입하여 청년 거점 공간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항으로,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 본 사업에 대하여 관계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 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

나. 「 장성호 적송 군락지 매입 」

○ 제안이유

장성호 주변 적송 군락지를 매입하여 관광명소로 개발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사업명: 장성호 적송군락지 매입
- 위치: 장성읍 용곡리 산77-1 등 14필지
- 매입규모: 14필지 87,352㎡(26,424평)
- 사업기간: 2022. 10 ~ 2023. 12.
- 소요예산: 400백만원(≒26,424평 × 15,000원)
- 공유재산관리계획

구분	재산의표시	면적(㎡)	예정가액(백만원)	취득사유
계	14필지	87,352	400	
토지	14필지	87,352	400	적송군락지 매입

○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관리계획안은 장성호 수변길 주변 적송 군락지를 매입하여 적송 군락지 보호는 물론, 방문객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새로운 관광명소로 개발하고자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 본 사업에 대하여 관계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 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

3.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회의록 비치)

4. 토론요지 :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의 안 제 번호	제2309호
-------------------	--------

2022.11.02.(수) 11:00
제3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심 사 보 고 서

안 건
총 1건(개정조례안 1) : 붙임 참조



산업건설위원회

심 사 보 고 총 괄

I 심사대상 안건

○ 의안번호 제2309호 :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II 심 사 경 과

의안번호	제 출 일	제 출 자 (발 의 자)	회 부 일	상 정 일 (제1차 산건위)
제2309호	2022. 10. 17.	장성군수	2022. 10. 18.	2022. 10. 26.

III 심 사 결 과

안 건	심사결과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 심사경위

- 제출일자 : 2022. 10. 17.
- 제출자 : 장성군수(도시재생과장)
- 회부일자 : 2022. 10. 18.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2. 10. 26.(제345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 법률 제17898호, 2021. 1. 12.
 - 시행령 제31877호, 2021. 7. 6.
 -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대한 개정 요청 접수
 - 민원봉사과-45871(2021.7.23.),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개정 협조 요청
 - 민원봉사과-40271(2022.6.30.),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개정 협조 요청
 - 그 외 조례 운영 과정에서 미비점 보완 및 개선
- 주요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반영
 - 주민의견 재열람·공고 규정의 명확화(안 제8조제1항)
 -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반영(안 제9조)

-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3년) 신설
(안 제15조의2)
-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건폐율 반영
(안 제55조)
-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건폐율 30%
완화 요건반영(안 제57조의2)
-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용적률 반영
(안 제60조제1항)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개정(별표 4~21)
- 개발행위허가 관련 규정 정비
 - 발전시설 허가기준 예외조항 변경(안 제20조의2)
 -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신설(안 제27조의2)
- 그 외 조례 운영 과정에서의 미비점 보완 및 개선
 - 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적용법령 변경(안 제12조)
 - 도시지역 내 유희토지 또는 대규모 시설 이전부지에 대한 지구
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5천제곱미터 이상) 명확화(안 제15조)
 - 개발행위 규모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명확화(안 제27조)
 -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삭제(안 제31조)
 - 경관지구 세분의 명칭 변경(안 제40조)
 - 기타 용도지역·구역 등의 용적률 대상 명확화(안 제61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사항 재구성(별표 1~24)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조례 개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개발행위허가 관련 규정 정비 및 그 외 조례 운영 과정에서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써,
-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을 반영하여 “지붕 위 태양광 설치와 관련하여 적용대상을 농업용 시설에서 작물재배사로 범위를 축소” 하였으며 “조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및 지붕 위 태양광 조항의 경우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는 조치내용을 반영하였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회의록 비치)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의안 번호	2311
----------	------

2022.11. 2.(수) 11:00

제3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I. 심사대상

- 2022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II.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22. 10. 17.
- 제출자 : 장성군수
- 회부일자 : 2022. 10. 25.
- 상정일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10. 28. ~ 11. 1.)
 - 실·과소장 질의·답변 및 설명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및 의결
- 의결일자 : 2022. 11. 1.(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의결

III. 예산안 총괄

- 규모 : 588,238백만원
- 회계별
 - 일반회계 : 576,572백만원
 - 특별회계 : 11,666백만원

○ 예산안 내역

(단위 : 백만원)

회계별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
합 계	588,238	571,909	16,329
일반회계	576,572	560,426	16,146
특별회계	11,666	11,483	183

IV. 제안설명 요지

○ 생 략

V.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세외수입과 특별교부세, 국·도비보조금, 기타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등에서 163억원의 가용재원이 새로 발생하였음
- 이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 소멸에 처한 지방에 지원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과 도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국도비 재원을 신규 사업 등에 반영하였으며, 그동안 사업여건 변동에 따른 사업비의 증감사항을 정리하여 편성된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주민편익사업 등 군민들의 불편함을 즉시 해소하는 현안사업에 집중 편성함.

-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와 어려운 경제 현실 속에서 군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더 나은 장성군의 발전된 모습을 위해 편성하였음.

VI. 질의 및 답변(토론) 요지

- 생 략

VII. 심사결과

- 일반회계 : 수정가결(붙임참조)
- 특별회계 : 원안가결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별첨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내역

1. 세 입 : 588,238,184천원

가. 삭감(일반+특별) : 해당없음

나. 증액(일반+특별) : 해당없음

다. 회계별 수정내역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 요구액 (제출 예산액)	심 사 결 과			인정액
		삭감액	증 액	순삭감액	
계	588,238,184	0	0	0	588,238,184
일반회계	576,572,330	0	0	0	576,572,330
특별회계	11,665,854	0	0	0	11,665,854

라. 삭감조서 : 해당없음

마. 증액조서 : 해당없음

2. 세 출 : 588,238,184천원

가. 삭 감

- 1) 일반회계 : 50,000천원(삭감조서 참조)
- 2) 특별회계 : 해당없음

나. 증 액

- 1) 일반회계 : 50,000천원(예비비)
- 2) 특별회계 : 해당없음

다. 회계별 수정내역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 요구액 (제출 예산액)	심 사 결 과			인정액
		삭감액	증 액	순삭감액	
계	588,238,184	50,000	50,000	0	588,238,184
일반회계	576,572,330	50,000	50,000	0	576,572,330
특별회계	11,665,854	0	0	0	11,665,854

라. 삭감조서 : 붙임과 같음 (붙임1)

마. 증액조서 : 붙임과 같음 (붙임2)

[붙임1]

1) 일반회계 삭감조서

(단위 : 천원)

쪽	예산과목	사 업 명	요구액	삭감액	인정액
	계	3 건	100,000	50,000	50,000
222	민간 자본이전	임산물 명품화(포장재) 지원사업	100,000	50,000	50,000

2) 특별회계 삭감조서

(단위 : 천원)

쪽	예산과목	사 업 명	요구액	삭감액	인정액
		해당없음			

[붙임2]

1) 일반회계 증액조서

-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 50,000 천원(증)

2) 특별회계 증액조서 : 해당없음